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537 발의연월일: 2021. 11. 25.

발 의 자:권명호·유경준·최춘식

김도읍 • 이철규 • 이주환

정운천 · 한무경 · 최승재

양금희 · 임이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'15년 정부 R&D 연구노트 관련 업무가 과기부로 일원화됨에 따라, 특허청 「발명진흥법」상의 연구노트 관련 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없 어,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연구노트 활용 사업,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, 연구노 트전문기관 기준 및 절차 등 연구노트 활용 촉진 규정을 삭제함(제 9조의2 삭제). 법률 제 호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	정	안	
제9조의2(연구노트의 활용 촉진)	<삭	제>			
① 특허청장은「과학기술기본	<u> </u>				
법」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					
이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					
연구 성과를 기록한 자료(이하					
"연구노트"라 한다)의 활용을					
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					
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					
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					
<u>야 한다.</u>					
1. 연구노트에 대한 인식을 높					
이기 위한 홍보					
2. 연구노트의 작성·관리 및 사용					
등을 위한 교육					
3. 서면 연구노트의 보급 및 전자					
연구노트의 시스템 구축 지원					
4. 그 밖에 연구노트 활용을 촉진					
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					
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					
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					
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					
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					
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				

-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상실한 경우
- 3.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 달한 경우
-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